

〈이사회 운영 규약〉

거거덩협동조합 총회 승인 (2024 년 3 월 26 일)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약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된 이사로 조합에 상시로 출근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
2. “비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 상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 시 참석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2 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 6 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마지막 화요일 전후 2 주 내에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전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 안전을 재상정 할 수 있다.

제 8 조(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
 - 나.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의안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나.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
 - 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협동조합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가. 조직의 변경
 - 나. 정원의 변경
 - 다. 국외사무소의 신설 및 폐지
5. 종합예산의 결정·변경
 - 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 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
 - 다. 예비비의 사용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징계, 포상, 승진, 정원 등)에 관한 사항
10.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11. 관계법령, 정관 또는 조합 내규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제 9 조(보고사항)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

② 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비상임이사)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견청취)

-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조합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있지 아니하다.

제 12 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작성된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동조합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 ③ 의사록 보존기간은 5 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의사록 작성은 조합원 중 1 인이 한다. 작성자는 이사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